

관리번호

-

(년 귀속)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

① 기본사항

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	-
③ 주 소		
④ 신고구분	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	⑤ 전화번호
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	여 1 / 부 2	
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⑦ 은행명	⑧ 계좌번호
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

③ 세무 대리인	⑨ 성명	⑩ 전화번호	⑪ 대리구분	⑬ 신고
	⑫ 관리번호	-	⑬ 조정번호	-

④ 퇴직소득명세	⑭ 지급처명	⑮ 입사일	⑯ 지급일	⑳ 퇴직급여	㉑ 비과세 퇴직급여	㉒ 과세대상 퇴직급여
	⑮ 사업자등록번호	⑰ 퇴사일	⑰ 근속월수			
	합 계					

⑤ 근속연수계산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정산근속연수	㉗ 2012.12.31. 이전 근속연수	㉘ 2013.1.1.이후 근속연수(㉖-㉗)
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⑥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
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퇴직소득세 금 액	
		퇴직소득(22)	29	
		근속연수공제	30	
		환산급여 [(29-30) × 12배/정산근속연수]	31	
		환산급여별공제	32	
		퇴직소득과세표준(31-32)	33	
	세액계산	계 산 내 용	금 액	
		환산산출세액(33 × 세율)	34	
산출세액(34 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35		
세액공제		48		
가산세		49		
기납부 세액		50		
차감		납부(환급)할 총세액(35-48+49-50)	51	
		분납할 세액(2월내)	52	
		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51-52)	53	

⑦ 2016-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(※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)
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퇴직소득세 금 액			
		퇴직소득(22)	29			
		근속연수공제	30			
		환산급여 [(29-30) × 12배/정산근속연수]	31			
		환산급여별공제	32			
		퇴직소득과세표준(31-32)	33			
	세액계산	계 산 내 용	금 액			
환산산출세액(33 × 세율)		34				
산출세액(34 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35				
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금 액			
		퇴직소득(22)	36			
		퇴직소득정률공제	37			
		근속연수공제	38			
		퇴직소득과세표준(36-37-38)	39			
	세액계산	계 산 내 용		2012.12.31.이전	2013.1.1.이후	합계
		과세표준안분 (39 × 각근속연수/정산근속연수)	40			
		연평균과세표준(40/각근속연수)	41			
		환산과세표준(41 × 5배)	42			
		환산산출세액(42 × 세율)	43			
		연평균산출세액 (12.12.31.이전: 41 × 세율, 13.1.1.이후: 43/5배)	44			
	산출세액(44 × 각 근속연수)	45				

퇴직소득 세액계산	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㉔	
	퇴직소득세 산출세액 (㉓ × 퇴직연도별 비율) + [㉔ × (100%-퇴직연도별 비율)]	㉕	
	세액공제	㉖	
	가산세	㉗	
	기납부 세액	㉘	
차감	납부(환급)할 총세액(㉕-㉖+㉗-㉘)	㉙	
	분납할 세액(2월내)	㉚	
	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㉙-㉚)	㉛	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71조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접수(영수)
일 자 인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첨부서류: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(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)

210mm×297mm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

작성 방법

1. 1란은 적지 않습니다.
2.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.
3. ❶ 기본사항(⑥)란: 퇴직소득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"종교관련종사자"에 해당하며, 「소득세법」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"종교관련종사자 여부"란에 '여 1'을 선택합니다.
4. ❷ 환급금 계좌신고(⑦·⑧)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5. ❸ 세무대리인(⑨~⑬)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6. ❹ 퇴직소득명세(⑭~⑳)란: ㉔ 퇴직급여란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.
- ※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(퇴직소득지급명세서)[별지 제24호서식(2)] 또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.
7. ❺ 근속연수계산(㉑~㉕)란: [근속연수 = (총근속월수 - 중복월수)/12]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. 다만,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하고,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.
8. ❻ 2016~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㉑ 퇴직소득란: ㉔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.
- 나. ㉒ 환산급여별공제란: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.

구분 \ 환산급여	8백만원 이하	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
환산급여공제	환산급여의 100%	8백만원+ (8백만원 초과분의 60%)	4천520만원+ (7천만원 초과분의 55%)	6천170만원+ (1억원 초과분의 45%)	1억5천170만원+ (3억원 초과분의 35%)

- 다. ㉓ 환산산출세액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- 라. ㉔ 과세표준안분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. 12. 31. 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. 1. 1.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.
- 마. ㉕ 환산과세표준란과 ㉖ 환산산출세액란: 2013. 1. 1.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.
- 바. ㉗ 연평균산출세액란: 2012. 12. 31. 이전 부분은 ㉔ 연평균과세표준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, 2013. 1. 1. 이후 부분은 ㉕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- 사. ㉘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: ㉙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.

구분 \ 퇴직연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퇴직연도별 비율	20%	40%	60%	80%

- 아. ㉚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」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
- 자. ㉛ 가산세란: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(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).
9.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,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